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20

서울고등법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5누22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감사원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12.
판 결 선 고	2006. 5.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룡 _____

 판사 안승호 _____

 판사 이정호 _____